

◆ D-57 산재보상과 다른보상(민사, 의료보험, 자동차보험, 국민연금)과의 관계

1) 민사상 손해배상법제와의 조정

- ㉠ 사업주 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전액수령후 산재보상을 청구한 경우 : 산재보상일수가 손해배상액의 보상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
- ㉡ 조정내용: 보상을 받게될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됨. 즉, 산재보험급여를 받은후 민사배상결정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함.

2)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의 조정

- ① 업무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종합보험 약관에 의하면 자손사고중 산재보상대상이 되는 재해에 대하여는 자동보험에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②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에 의하여 산재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음
- ③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손해배상액이 지급되면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산재보험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, 반대로 산재보험에서 먼저 지급하면 그 급여액을 가해인 제3자에게 구상권 행사함.
- ④ 조정대상은 동일한 사유인 치료비와 일실이익에 한하며, 위자료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받은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음.

※ 자손보험(임의보험)은 상해보험의 성격으로서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기부담하에 재해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중보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,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. (보상 6702-241,'95.8.29)

3) 국민연금법과의 관계

-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애,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,유족연금액의 1/2을 지급함.

4) 국민건강보험법과의 관계

-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“업무상 또는 공무상질병. 부상.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배상을 받게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”고 규정.
-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였다가 후일 산재보험으로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보험관할공단에 “의료보험부당이득금반환”조치를 한 이후, 산재법에 의거 “요양비청구서”에 부당이득금납부영수증과 진료비내역서를 첨부하면 병원비를 받을 수 있음.
- 위 부당 이득금을 일시에 납부할수 없을 경우에는 “요양비 수령 대체확인서”, 의료보험보험자의 부당이득금결정통지공문 및 납부고지서를 첨부하면 의료보험 처리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보험으로 직접 이체하고 나머지 재해자부담분의 요양비에 대하여 지급함.